##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150 발의연월일: 2020. 11. 10.

발 의 자:이용우·고영인·강준현

홍정민 • 이용빈 • 민병덕

진성준 · 서영석 · 김주영

송영길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(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)으로 변경하였는데,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5조제5항).

법률 제 호

###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5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합병·전환에 관한 절차의	제5조(합병·전환에 관한 절차의
간소화 등) ① ~ ④ (생 략)	간소화 등) ① ~ ④ (현행과
	같음)
⑤ 금융기관이 합병을 하는 경	⑤
우에는 「상법」 제522조의2제	
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승인을	
위한 주주총회일 7일 전부터	
합병을 하는 각 금융기관의 <u>대</u>	<u>재</u>
차대조표를 그 금융기관의 본	무상태표
점에 비치(備置)할 수 있다.	
⑥ ~ ① (생 략)	⑥ ~ ① (현행과 같음)